

제2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의의안.....2면
- 제2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2025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계획.....59면
- 제2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검토보고서.....63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5. 10.16.(목) 11:0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의안

〈 의 안 목 록 〉	〈발의 및 제출자〉
1. 성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성우의원외6인】
2.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노연의원외6인】
3.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4. 성주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5.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성 주 군 수】
6.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성 주 군 수】
7.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성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5. 발의자 : 김성우,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시·군·구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로 전환된 사항을 반영하여 성주군의 책무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 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명시(안 제3조~제7조)
- 다.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명시(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주군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제4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군수는 법 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어야 하며,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법 13조제4항에 따라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전문기관, 일시보호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성주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성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영유아 보육시설, 아동보호 관계기관, 경찰서,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5.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 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
-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5. 발의자 : 여노연,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장익봉

1. 개정이유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표를 개정하여 숙박업을 하는 소상공인에게도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에서 숙박업을 제외(별표)

3. 조례안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제8조 관련)

표준산업분류	업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	주점업
561 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711, 712, 731, 86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8550	일반 교습 학원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무도장, 댄스홀 등)
91249	기타 캠블링 및 베틀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 은 제외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 생계형 기준은 지역건강보험료 79,400원 미만 납입하는 개인사업자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중), 주점업(56), 식당업(561중), 일반교습학원(8550), 무도장운영업(91291), 노래연습장운영업(91223)을 용자대상에 포함(단, 주점업 중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용자 허용)

*** 제외대상 업종은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기준 변동시 변동기준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제8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표준산업분류</th> <th style="width: 85%;">업 종</th> </tr> </thead> <tbody> <tr><td>46102 중</td><td>담배 중개업</td></tr> <tr><td>46109 중</td><td>골동품, 귀금속 중개업</td></tr> <tr><td>46209 중</td><td>앞담배 도매업</td></tr> <tr><td>46331</td><td>주류 도매업</td></tr> <tr><td>46333</td><td>담배 도매업</td></tr> <tr><td>46416 중</td><td>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td></tr> <tr><td>55</td><td style="color: red;">숙박업, 단 생계형¹⁾은 제외</td></tr> <tr><td>56</td><td>주점업</td></tr> <tr><td>561 중</td><td>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td></tr> <tr><td>64</td><td>금융업</td></tr> <tr><td>65</td><td>보험 및 연금업</td></tr> <tr><td>66</td><td>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td></tr> <tr><td>68</td><td>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td></tr> <tr><td>711, 712, 731, 86</td><td>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td></tr> <tr><td>75993</td><td>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td></tr> <tr><td>8550</td><td>일반 교습 학원</td></tr> <tr><td>91121</td><td>골프장 운영업</td></tr> <tr><td>91291</td><td>무도장 운영업(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무도장, 댄스홀 등)</td></tr> <tr><td>91249</td><td>기타 갬블링 및 베틀업</td></tr> <tr><td>91223</td><td>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은 제외</td></tr> <tr><td>9612 중</td><td>증기탕 및 안마시술소</td></tr> <tr><td>기타</td><td>대부업 · 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td></tr> </tbody> </table>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앞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5	숙박업, 단 생계형 ¹⁾ 은 제외	56	주점업	561 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711, 712, 731, 86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8550	일반 교습 학원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무도장, 댄스홀 등)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틀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 [*] 은 제외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대부업 · 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p>[별표]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제8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표준산업분류</th> <th style="width: 85%;">업 종</th> </tr> </thead> <tbody> <tr><td>46102 중</td><td>담배 중개업</td></tr> <tr><td>46109 중</td><td>골동품, 귀금속 중개업</td></tr> <tr><td>46209 중</td><td>앞담배 도매업</td></tr> <tr><td>46331</td><td>주류 도매업</td></tr> <tr><td>46333</td><td>담배 도매업</td></tr> <tr><td>46416 중</td><td>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td></tr> <tr><td>56</td><td>주점업</td></tr> <tr><td>561 중</td><td>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td></tr> <tr><td>64</td><td>금융업</td></tr> <tr><td>65</td><td>보험 및 연금업</td></tr> <tr><td>66</td><td>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td></tr> <tr><td>68</td><td>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td></tr> <tr><td>711, 712, 731, 86</td><td>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td></tr> <tr><td>75993</td><td>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td></tr> <tr><td>8550</td><td>일반 교습 학원</td></tr> <tr><td>91121</td><td>골프장 운영업</td></tr> <tr><td>91291</td><td>무도장 운영업(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무도장, 댄스홀 등)</td></tr> <tr><td>91249</td><td>기타 갬블링 및 베틀업</td></tr> <tr><td>91223</td><td>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은 제외</td></tr> <tr><td>9612 중</td><td>증기탕 및 안마시술소</td></tr> <tr><td>기타</td><td>대부업 · 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td></tr> </tbody> </table>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앞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	주점업	561 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711, 712, 731, 86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8550	일반 교습 학원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무도장, 댄스홀 등)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틀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 [*] 은 제외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대부업 · 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앞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5	숙박업, 단 생계형 ¹⁾ 은 제외																																																																																										
56	주점업																																																																																										
561 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711, 712, 731, 86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8550	일반 교습 학원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무도장, 댄스홀 등)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틀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 [*] 은 제외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대부업 · 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앞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	주점업																																																																																										
561 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711, 712, 731, 86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8550	일반 교습 학원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무도장, 댄스홀 등)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틀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 [*] 은 제외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대부업 · 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10월 일
제출자 : 성주군수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위임 사무를 신설 및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회 인사권 위임 사항 삭제(안 제1조, 제2조, 별표)
- 나. 읍·면장 위임사무 신설·폐지 등 정비, 근거법령 현행화(안 별표)
 - 1) 지방세 10만원 미만 결손처분→30만원 미만 정리보류
 - 2) 재무행정 분야에 추정금액 2,000만원 이하 제조 및 용역 추가
 - 3) 보조금 100만원 이하 관리 삭제
 - 4)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관리 경비 지원 추가
 - 5) 근거 법령 현행화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8670(2025. 7. 25.)]
-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가족지원과-37236(2025. 7. 28.)]
- 마. 입법예고 : 8. 21. ~ 9. 10.
-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력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읍·면장 위임사무명(권한위임) (제2조 관련)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총무행정	1. 소속 직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처리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 제7조의7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2. 읍·면 팀장요원 보직 및 소속 직원의 배치	지방공무원법 제6조	
새마을행정	1. 군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중 다음의 권한	1. 대부대상자 추천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4조	
		2. 자금의 회수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8조	
		3. 사업지도감독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9조	
재무행정	1. 지방세법중 다음의 권한	1. 지방세 징수	지방세기본법 제6조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	
		2.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기본법 제6조, 제8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3. 고지서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6조, 제28조~제33조	
		4.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송달 및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지방회계법 제21조	
		5. 지방세 부과		
		가. 취득세 자진신고 (단, 이륜자동차)	지방세기본법 제6조 지방세법 제20조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	
		나. 취득세 부과 (단, 수시분)	지방세기본법 제6조 지방세법 제21조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제3조	
		다. 지방소득세 부과 (단, 수시분)	지방세기본법 제6조 지방세법 제98조, 제103조의26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	
		라. 주민세 사업소분 (단, 수시분)	지방세기본법 제6조 지방세법 제83조, 제84조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	
		마. 지방세 건당 30만원 미만의 정리보류	지방세기본법 제6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	
		※ 2011.1.1이전의 등록세·주민세·사업소세의 추정분은 종전의 위임규정에 따른다.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재무 행정	2. 성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중 다음 사항	1.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 의 공사집행	지방회계법 제29조
		2. 주민부담 2분의1 이상인 공사 집행	"
		3. 3,000만원 이하의 공사착 공 및 준공검사	"
		4. 추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
	3. 물품관리조례 중 다음 사항	1. 불용품 매각 처리	성주군물품관리조례 제17조
환경 행정	1.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1. 수수료 부과·징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성주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12조
	2. 공중화장실에 관한 다음 사항	1.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사회 행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다음의 권한	1. 수급자증명서의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1.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교통 행정	1. 이륜자동차에 관한 다음 권한	1. 이륜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산림 행정	1. 산림에 관한 다음 권한	1. 입산신고	산림보호법 제 15조
도시 행정	1.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 및 중간 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 중 다음의 권한	1. 시설물의 운영관리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 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 제7조
		2. 관리에 드는 경비의 지원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 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건설 행정	1. 군도에 관한 다음 권한	1.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	도로법 제66조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회의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세의 부과·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 사무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구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정리보류) 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리보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채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리보류를 하려는 때에는 채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채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채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채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구역은 제외한다)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

제7조(시설물의 운영·관리)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장·면장에게 운영·관리하도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주체로서 필요에 따라 시설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에 드는 경비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관리유지비(운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총무새마을과 행정팀장

성주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10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생활문화지원의 범위에 종교단체의 비종교적 문화활동을 포함함으로써 종교와 문화의 접합점 모색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군수는 종교단체의 포교 목적 사업을 제외한 비종교적 문화활동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6조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기획예산실-2579(2025.2.25.)]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지원과-10729(2025.2.26.)]
- 3) 입 법 예 고 : 의견없음 (예고기간 : '25.05.21. ~ 06.10.)
-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1]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군수는 종교단체의 포교 목적 사업을 제외한 비종교적 문화활동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생활문화지원) ①~③(생략) <u><신 설></u>	제6조(생활문화지원) ①~③(현행과 같음) ④ <u>군수는 종교단체의 포교 목적 사업을 제외한 비종교적 문화활동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u>

관련법령 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성주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포교 목적사업을 제외한 비종교적 문화활동

※ 2025년 봉축탑및트리설치 예산 60,0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예상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10월 일
제출자 : 성주군수

1. 제정이유

- 성주 한개마을 내 문화체험시설의 체계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가민속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활용을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문화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문화체험시설 관리 및 위탁 (안 제3조)
- 다.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의무 (안 제4조~제5조)
- 라. 운영 평가기준, 재계약 및 지도감독 (안 제6조~제7조)
- 마. 시설사용료 징수·감면·면제 및 반환규정 (안 제8조~제10조)
- 바. 손해배상 책임 처리 절차 (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외 1 (※붙임)
- 나. 예산조치 :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7194(2025. 6. 26.)호]
 2)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가족지원과-33907(2025. 7. 8.)호]
 3)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5. 8. 26.~9. 15.)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성주 한개마을의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험시설"이란 성주군이 한개마을 내에서 문화체험을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문화체험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성주군수로부터 문화체험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문화체험시설 관리 및 위탁) ① 문화체험시설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체험시설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문화체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 시설의 명칭, 위치 및 범위
2. 위탁기간(최초 5년이내,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
3.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4. 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수입·지출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 해지 사유 및 절차
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 선정 기준)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한다.

1. 해당 분야의 운영 경험 및 전문성
2. 문화유산 및 민속마을에 대한 이해도
3. 지역 주민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
4.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타당성 및 공공성
5. 재정 운용 능력 및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방안
6. 시설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계획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재산의 안전한 유지·관리
2. 비품 및 장비의 분실, 도난, 훼손 방지
3. 공공성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방문객 편의 제공
4.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증·개축 또는 용도 변경 금지

5. 주민과의 협력 및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연계 노력

6. 관계 법령, 본 조례 및 위탁 계약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② 수탁자는 마을주민, 문화유산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설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 평가 및 재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문화유산 보존 및 안전 관리 수준

2.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운영 성과

3.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만족도

4. 수입·지출의 투명성 및 정산의 적정성

③ 평가 결과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평가 결과 우수한 경우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군수는 별표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①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등) ①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기상재해 등에 따른 교통단절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② 이용자의 예약취소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사유발생일 5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예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11조(손해배상) 사용자 및 수탁자가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 운영물품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체험시설 시설 사용료 (제8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성수기: 매년 4월 1일~10월 31일 및 주말(금~일), 공휴일

나. 비수기: 11월 1일~익년 3월31일까지의 평일.

다. “사용기준”은 숙박 1실 2명기준, 기준 초과시 1명당 10,000원,
체험은 1실 4시간 기준, 초과시 1시간당 5,000원을 추가한다.

2.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가옥현황				사용료(원)		비고 (기준)
	가옥명	구조	객실수	정원	성수기 (주말)	비수기 (주중)	
숙박형	남정선가옥	초가	2	4	100,000	70,000	가옥 전체
	옥산댁	초가	2	4	120,000	90,000	“
	경주댁	초가	3	6	150,000	110,000	“
체험형	전체가옥	초가	2~3	4~6	50,000	30,000	1실 4시간

※ 퇴실기준일 해당 객실의 입실객이 없을 경우 추가사용료를 지급하여 연장사용 가능하며, 퇴실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이후는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별표 2]

문화체험시설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감면대상자	감면율	비고
시설사용료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20%	- 숙박형 해당 - 비수기 해당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그 자녀		
	다자녀 가정		
	성주군민	20%	- 숙박형 해당 - 비수기 해당
	자매결연 도시 지역주민·기관·단체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10%	- 숙박형 해당 - 비수기 해당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	10%	- 숙박형 해당 - 비수기 해당

※비고

1. 시설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하며, 1인 1실에 대한 감면만 가능 또한 감면대상자는 입실 당일 문화체험시설 관리 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 라.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 마. “성주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성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바. “자매결연 도시 지역주민·기관·단체”의 경우 성주군과 결연을 맺은 지역, 기관, 단체를 말한다.
 - 사.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란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별표 3]

문화체험시설 사용료 환불 기준(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	환불 기준		비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이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이용예정일 당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료 전액 환불 · 이용료의 90% 환불 · 이용료의 70% 환불 · 이용료의 50% 환불 · 이용료의 20% 환불 	

※ 소비자가 사용당일 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취소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문화체험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직업(단체명)	
이용 시설명				
이용 목적				
이용 기간				
면제 종류				
면제 사유				
<p>「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면제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신청인] 인 </p> <p style="margin-top: 40px;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성 주 군 수 귀 하</p>				

□ 관계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② 제1항에 따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외교·국방 등 민간위탁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의2(재위탁) ① 민간수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재위탁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제13조에 따른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⑤ 위탁기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문화예술과 국가유산관리팀장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10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체류형작은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3조)
- 나. 입주신청자격,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 다. 입주계약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3조)
- 라.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안 제15조)
- 마.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8795(2025.07.29.)호]
- 라.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37143(2025.07.25.)호]
-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예고기간 : 2025.08.20.~09.09.)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 정주인구 및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 조성된 체류형작은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류형작은정원”이란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45-1 일원에 조성된 체류형 정원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체류형작은정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입”이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성주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행정상 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체류형작은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류시설, 텃밭 등을 포함한 입주대상시설
2. 관리동 : 커뮤니티실, 사무실, 휴게실 등
3. 부대시설 :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내·외부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조형물, 비품 등 그 밖의 부대설비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주자가 성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개선 및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하여 입주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 신청자격) 체류형작은정원의 입주신청자격은 19세 이상인 성인으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성주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6조(입주자 모집 및 선정) ① 입주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류형 작은정원을 사용하려는 입주신청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 세대의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③ 군수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7조(입주계약) ① 체류형작은정원의 입주기간은 입주 및 퇴거 준비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체류형작은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에게 사용료 및 보증금을 징수하며, 사용료 및 보증금은 제17조에 따른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시작일 전까지 사용료 및 보증금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류형작은정원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난방 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은 퇴거 시 입주자에게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료, 공공요금 체납금, 수리비와 청소비 등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제반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에도 해당 월의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이자 없이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긴급 보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② 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체류형작은정원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으로 전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쾌적한 정주여건을 위하여 시설 내에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4.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5.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중에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사용기간 중 주민등록 주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제11조의 주소 확인 등을 위하여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계약기간 경과에 따른 조치) ① 입주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체류형작은정원을 군수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입주자격 상실로 인한 퇴거 또는 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명도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고,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변상금의 금액, 부과,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유지보수관리) ① 시설에 대한 유지 및 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 : 군수의 유지 및 보수 범위는 체류형작은정원의 공용부분
 2. 입주자 : 입주자의 유지 및 보수 범위는 체류형작은정원의 전용부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체류형작은정원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 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위탁 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군수는 입주자 간의 교류와 공동체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체류형작은정원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주대상시설의 사용료 및 보증금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담당 부서의 장

2. 관련분야 전문가, 교수, 단체의 임직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도농교류법 제16조 제1항」 (안 제5조 관련)

제16조(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정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및 기업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 등 농어촌지역사업에 투자하거나 자발적으로 지원·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의 제공, 행정적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안 제7조 ~ 제10조 관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도시계획과 농촌활력팀장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10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예방접종 비용책정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건소 내 폐지된 검사항목을 삭제하며 제증명 검사의 종류와 수수료를 실태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동시에 인용 법률명 및 조례를 법조문 체계에 맞추어 재정비하기 위해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진료비 징수 등 유료예방 접종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제3항)
- 나. 기타수가 등 수질검사에 대한 사항을 삭제(안 제3조제1항)
- 다. 관련법령 및 조문체계 정비(안 제2조, 제4조제3항)
- 라. 제증명발급수수료 규정(안 [별표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도로교통법」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예산실-9067호(2025.8.4.)]
-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사항 없음[가족지원과-38531호(2025.8.1.)]
- 마. 입법예고 : 2025. 8. 19. ~ 9. 9.
-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부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준액을 징수한다.
- ③ 「국민건강보험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금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 ④ 그밖에 유료예방접종 등에 드는 비용은 당해연도 약품 구입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치과예방진료비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2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제 증명 발급 수수료(제4조 관련)

구 분	기 준	수 수 료	비 고
1. 일반진단서 (취업용, 기숙사 제출용, 외국인 결핵검진 확인서)	1건	500원	검사 및 진단비 별도
2.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3,000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근거
3. 기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	300원	
4. 각종 증명서 1통 초과 발급	"	100원	
5.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 /운전면허 응시원서 신청서	"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수수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진료비등 징수)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p> <p>1. <u>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준액을 징수한다.</u></p> <p>2. <u>「국민건강보험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금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u></p> <p>3. <u>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 및 예방진료 예방접종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치과예방진료비용은 별표1과 같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조(진료비등 징수) ①----- ----- -----.</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② <u>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준액을 징수한다.</u></p> <p>③ <u>「국민건강보험법」 외 다른</u></p>

<신 설>

제3조(기타수가) 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에 규정한 “검사, 시험 등 수수료”를 준용한다.

제4조(건강진단 및 제증명발급수수료) ① (생 략)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건강진단결과서)등 관계법령에 수수료가 규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금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④ 그밖에 유료예방접종 등에 드는 비용은 당해연도 약품 구입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초과예방진료비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기타수가) <삭 제>

제4조(건강진단 및 제증명발급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2에 따라 징수한다.

□ 관계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근거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9조제2항 근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를 신청하는 사람
2. 제87조와 제88조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거나 적성검사 연기를 신청하는 사람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팀장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제2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2025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계획



성 주 군 의 회

2025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계획

- ❖ 군정 주요사업장 및 민원 현장 등을 방문하여 의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점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 건의와 대안 제시

방문 개요

- 회 기 : 제2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 일 정 : 2025. 10. 17.(금) ~ 10. 22.(수) [4일간]
- 장 소 : 이천친환경조성사업장 외 9개소
- 참 석 : 15명(의원 8,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2, 의사팀장 외 3)
- 주요내용 :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민원현장 개선사항 및 대안 제시 등

사업장 현황

읍 면	사업명 및 사업장명	소관부서	비 고
계	6개면, 10개소	5개 부서	
성주읍	①이천친환경조성사업	건 설 과	
	②도시재생2단계(별의별 문화마당)	도시계획과	
	③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	도시계획과	
	④성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건 설 과	
선남면	⑤성주반다비체육관	체육시설사업소	
수륜면	⑥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작은리)	안 전 과	
금수강산면	⑦도남천 정비공사(어은리)	건 설 과	
대가면	⑧심산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관 광 과	
벽진면	⑨벽진면 어울림복합타운 건립사업	도시계획과	
	⑩초전~벽진(군도4호선) 확포장공사	건 설 과	

세부시간계획(안)

10. 17.(금)

※ 방문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 간	소 요	사 업 및 사 업 장 명		소 관 부 서
10:00 ~ 10:30	30'	이 동	• 의회 출발	
10:30 ~ 10:50	20'	수륵면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수륵면 작은리 369	안 전 과
10:50 ~ 11:20	30'	이 동		
11:20 ~ 11:40	20'	성주읍	• 이천 친환경 조성사업 성주읍 백전리 503-4	건 설 과
		중 식		

10. 20.(월)

시 간	소 요	사 업 및 사 업 장 명		소 관 부 서
10:30 ~ 10:40	10'	이 동	• 의회 출발	
10:40 ~ 11:00	20'	성주읍	• 성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성주읍 성산리 161-1	건 설 과
11:00 ~ 11:10	10'	이 동		
11:10 ~ 11:30	20'	선남면	• 성주반다비체육센터 선남면 관화길 108	체 육 시 설 사 업 소
		중 식		

10. 21.(화)

시 간	소 요	사업 및 사업장명		소관부서
10:00 ~ 10:20	20'	이 동	• 의회 출발	
10:20 ~ 10:40	20'	금수강산면	• 도남천 정비공사 금수강산면 어은리 477-1	건 설 과
10:40 ~ 10:55	15'	이 동		
10:55 ~ 11:15	20'	벽진면	• 벽진면 어울림복합타운 건립사업 벽진면 수촌리 810	도시계획과
11:15 ~ 11:25	10'	이 동		
11:25 ~ 11:45	20'	벽진면	• 초전~벽진 군도4호선 확포장공사 벽진면 가암리 157-6	건 설 과
		중 식		

10. 22.(수)

시 간	소 요	사업 및 사업장명		소관부서
10:30 ~ 10:40	10'	이 동	• 의회 출발	
10:40 ~ 11:00	20'	대가면	•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대가면 칠봉리 845-1	관 광 과
11:00 ~ 11:10	10'	이 동		
11:10 ~ 11:30	20'	성주읍	• 도시재생2단계(별의별문화마당) 성주읍 성산리 2102-1	도시계획과
11:30 ~ 11:35	05'	이 동		
11:35 ~ 11:55	20'	성주읍	•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 성주읍 성산리 69	도시계획과
		중 식		

제2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 성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성우의원외6인】
○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노연의원외6인】
○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시·군·구 중심의 아동보호체제로 전환된 사항을 반영하여 성주군의 책무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 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명시(안 제3조~제7조)
- 다.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명시(안 제8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성주군의 책무성을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아동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표를 개정하여 숙박업을 하는 소상공인에게도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에서 숙박업을 제외(별표)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업종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펜션·가족형 숙박시설 등 숙박업을 영위하는 지역 소상공인도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위임 사무를 신설 및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 인사권 위임 사항 삭제(안 제1조, 제2조, 별표)

나. 읍·면장 위임사무 신설·폐지 등 정비, 근거법령 현행화(안 별표)

- 1) 지방세 10만원 미만 결손처분→30만원 미만 정리보류
- 2) 재무행정 분야에 추정금액 2,000만원 이하 제조 및 용역 추가
- 3) 보조금 100만원 이하 관리 삭제
- 4)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관리 경비 지원 추가
- 5) 근거 법령 현행화 용어 정비

3.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군수 권한 중 일부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이를 신설·폐지·정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히,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 관련 권한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며, 아울러 지방세법·지방회계법 등 개별 법령 개정에 따른 금액기준 및 용어 정비의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읍·면장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생활문화지원의 범위에 종교단체의 비종교적 문화활동을 포함함으로써 종교와 문화의 접합점 모색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군수는 종교단체의 포교 목적 사업을 제외한 비종교적 문화활동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6조제4항 신설)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종교단체의 포교 목적 사업은 배제하되, 비종교적 문화활동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와 생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 부합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종교단체의 비종교적 문화활동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성주 한개마을 내 문화체험시설의 체계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활용을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문화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문화체험시설 관리 및 위탁 (안 제3조)
- 다.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의무 (안 제4조~제5조)
- 라. 운영 평가기준, 재계약 및 지도감독 (안 제6조~제7조)
- 마. 시설사용료 징수·감면·면제 및 반환규정 (안 제8조~제10조)
- 바. 손해배상 책임 처리 절차 (안 제11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성주 한개마을의 체계적 보존·활용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설 운영주체,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손해배상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 부합하며,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체류형작은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3조)
- 나. 입주신청자격,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 다. 입주계약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3조)
- 라.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안 제15조)
- 마.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주군의 정주인구 및 관계인구 확대를 위하여 조성된 체류형 작은정원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동체 활성화, 나아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를 위하여 입주자 자격과 모집방법, 사용료 징수,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 부합하며,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예방접종 비용책정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건소 내 폐지된 검사항목을 삭제하며 제증명 검사의 종류와 수수료를 실태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동시에 인용 법률명 및 조례를 법조문 체계에 맞추어 재정비하기 위해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진료비 징수 등 유료예방 접종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제3항)
- 나. 기타수가 등 수질검사에 대한 사항을 삭제(안 제3조제1항)
- 다. 관련법령 및 조문체계 정비(안 제2조, 제4조제3항)
- 라. 제증명발급수수료 규정(안 [별표2])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 비용 책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폐지된 수질검사 항목을 삭제하며, 제증명 수수료 규정을 현행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유료예방접종 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며, 관련 법령 인용과 조문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법적 정합성과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 부합하고, 보건소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